
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전병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0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1년 01월 08일

발 의 자: 전병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경만선, 권순선, 김 경, 김경영, 김상진, 김생환, 김수규, 김용연, 김재형, 문영민, 양민규, 이동현, 이석주, 이호대, 임만균, 장상기, 장인홍, 최기찬, 추승우, 황인구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지역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해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
라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.

마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).

바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3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디지털 리터러시”란 디지털 기술, 데이터, 정보, 콘텐츠, 미디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과 소양을 말한다.
2. “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
2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4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·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
5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
6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
7.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
3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자문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, 교육계, 학계, 관련 전문기관,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두며,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
2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3.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수당)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연수)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재정지원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·연구 및 조사
2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
3.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자료 개발
4.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3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 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 서 번 호

2020122200000002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 청 인 : 전병주 의원

담 당 : 남승우 과장
이정수 팀장
원동아 예산분석관

접 수 일 : 2020.12.22.

회 신 일 : 2020.12.22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(자문위원회의 설치), 제10조(수당)에 따라 비용 발생

※ 단, 같은 조례안 제11조(연수), 제12조(재정지원), 제13조(협력체계 구축)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과학영재정보화교육팀에서 ‘디지털 시민성 역량 함양’, ‘학교 미디어교육센터 운영’ 등의 사업을 통해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(붙임 및 참고자료 첨부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[제5조(자문위원회의 설치), 제10조(수당)에 해당]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≍ 25,500천원(연평균 5,100천원)

○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5,500천원으로 연평균 5,100천원임

○ 추계의 전제

- 제5조(자문위원회의 설치)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하되,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1명,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전문가 14명은 외부위원으로 가정함
-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가정(정기회 2회 기준)
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≍ 25,500천원(연평균 5,100천원)

- 총비용 = 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비
= 25,5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 계
구분	-	-	-	-	-	-	-
	세입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(안제5조)	5,100	5,100	5,100	5,100	5,100	25,500
	소계(b)	5,100	5,100	5,100	5,100	5,100	25,500
	총비용(b-a)	5,100	5,100	5,100	5,100	5,100	25,500

○ 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비 ≒ 25,5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 (\text{연간위원회설치·운영비})_i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)

- 연간 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비 ≒ 연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+ 연간
자문위원회 업무추진 경비
≒ 4,200천원 + 900천원
≒ 5,100천원

· 연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= 구성원 수 × 1인당 회의참석 수당 × 1년간 회의개최 횟수
= 14명 × 150,000원 × 2회
= 4,200천원

※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「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에 따라
기본료 10만원,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이며,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에
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15만원으로 운용할 예정임

※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1명을 제외한 14명 지급 전제

· 연간 자문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= 전체 위원 수 ×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× 1년간 회의개최
횟수
= 15명 × 30,000원 × 2회
= 900천원

※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「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에
따라 3만원으로 가정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원동아

☎ 02-2180-7953

e-mail : dongyal@seoul.go.kr

【붙임】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

(단위:천원)

구분	세부사업명 (세세부사업명)	2021년 예산	사업내용
제11조(연수), 제12조(재정지원), 제13조(협력체계 구축)	디지털시민성역량함양 (교육자료개발및배포 : 1,980천원) (정보통신윤리교육지원 : 36,620천원)	38,600	사업목적 및 필요성 - 디지털 시민성 교육 신장 - <u>디지털 미디어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 제공</u> - 인터넷중독 예방, 해소 관련 교육 및 지원 활동 (교육자료개발및배포) - 대상 : 초, 중, 고 학생, 교사 - 내용 : 학교 수업과 교사용 연수 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 및 배포 - 소요예산 : 1,980천원(안제11조 및 제12조 해당) (정보통신윤리교육지원) - 대상 : 초, 중, 고 학생, 교사 - 내용 : 정보통신윤리 자료 개발 및 배포, 학부모 연수 진행(안제8조 해당) - 소요예산 : 36,620천원(안제11조 및 제12조 해당)
	학교미디어교육센터운영 (학교미디어교육센터운영 : 100,000천원)	100,000	사업목적 및 필요성 -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능동적·창의적 시민성 육성 및 지역 간 미디어 교육 인프라 격차 해소 (학교미디어교육센터운영) - 대상 : 학교미디어교육센터 협력 기관에 위탁 운영 - 내용 : 미디어 관련 교사 및 학생 체험 활동 실시, 디지털 시민성,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(안제13조 해당) - 소요예산 : 100,000천원

자료 :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